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처, 협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18. 8. 23.(목)까지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하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택정비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공공주택지원과장, 민간임대정책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교통정책조정과장, 물류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기획총괄과장, 도심재생과장, 기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세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주택관리협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장

주무관	손은수	서기관	전상익	주택건설공급 전결 2018. 7. 23. 과 과장 이유리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5367	(2018. 7. 23.)	접수	법무담당관-14198 (2018.07.24.)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75	팩스번호	044-201-5684	/ pp1703@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